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TA 2010)

- ①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년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존할 의무가 면제된다.
- ④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⑤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CPA 2008)

-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 100만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④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⑤ 숙박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받은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CPA 2009)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거래징수라 한다.
- ②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본다.
- ③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④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대방이 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CPA 2005)

- ①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소매업, 미용, 육탕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④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 ⑤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는 수탁자가 수탁자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5.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CPA 2011)

- 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한다.
- ④ 전자세금계산서를 5,500건 발급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550,000원 이다.
- ⑤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CPA 2006)

-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②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
- ③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④ 국내주둔 미합중국군대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⑤ 부동산 임대료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7.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가장 부적합한 것은? (CPA 2001)

- ① 간주임대료
- ② 면세사업으로 전용되는 자가공급
- ③ 영세율적용을 받는 재화의 공급
- ④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 ⑤ 사업상 증여

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CPA 2012 수정)

- 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② 소매업,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 ③ 직전연도 3억원 미만의 공급가액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
- ④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며, 미전송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 ⑤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 직매장반출시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9.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CTA 2012)

-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②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
- ③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는다.
- 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10.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사 2010)

- 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③ 단가와 수량
- ④ 작성연월일
- 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1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관세사 2010)

- ① 택시운송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② 목욕업을 영위하는 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③ 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④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 또는 발급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 법령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12.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는?
(관세사 2011)

- ① 세액공제금액 : 발급 건수에 따라 100원, 공제한도 : 과세기간당 100만원
- ② 세액공제금액 : 발급 건수에 따라 100원,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③ 세액공제금액 : 발급 건수에 따라 200원, 공제한도 : 과세기간당 100만원
- ④ 세액공제금액 : 발급 건수에 따라 200원,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⑤ 세액공제금액 : 발급 건수에 따라 500원,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1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관세사 2012)

- ① 택시운송사업자
- ②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 ③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 ④ 공급받는 자로부터 발급을 요구받은 소매업자
- ⑤ 목용탕업자

14.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관세사 2012)

- ①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는다.
-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는다.
- ③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필요가 없다.
- ④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차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는다.
- ⑤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15.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2)

- ①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②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 ③ 면세사업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⑤ 법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16.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은? (단,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영수증발급대상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관세사 2013)

- ① 소매업
- ② 음식점업
- ③ 부동산중개업
- ④ 숙박업
- ⑤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7.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이외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② 수입되는 재화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자는 국세청장이다.
- ③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④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으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8. 다음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처음 공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환입된 날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날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덧붙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③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원칙상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없다.
- ④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발급할 수 있다.
- 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발급할 수 있다.

19.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부터 이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해당 사업자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발급건수마다 200원(연간 1백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다음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설명이다. 이 중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시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③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한한다.
- ④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 ⑤ 간이과세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21.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이어도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 ③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또는 권리가 면세대상이라면 공급받는자의 대리납부의무는 없다.
- ⑤ 권리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포함된다.

2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해당 용역의 대가로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대리납부를 한다.
-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해당 용역의 대가로 외화를 원화로 매입하여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대리납부를 한다.
- ③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또는 권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대리납부의무를 진다.
- ⑤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며, 대리납부할 금액이 잘못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제4장 정답 및 해설

1. ③

- ①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년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공급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2. ⑤

법인세 등의 계산시 이중공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

3. ②

영수증에 해당한다. 다만, 법소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뿐이다.

4. ④

- ① 미등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②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되거나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인 때이다.
- ⑤ 수탁자가 위탁자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5. ②

- ①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 ④ 건당 200원이며, 연간 1,000,000원이 한도이다.
- ⑤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6. ①

7. ③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는 발급한다.

8. ④

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소매업,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영수증발급의무자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직전연도 3억원 미만의 공급가액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

⑤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 직매장반출은 공급이 아니다.

9. ②

해당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0. ③

11. ④

12. ④

13. ④

14. ③

15. ③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16. ⑤

17. ③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이외의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수입되는 재화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자는 세관장이다.

④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단, 선박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8. ④

-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덧붙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③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19. ③

-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 이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 ④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발급건수마다 200원(연간 1백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④

-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시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③ 면세사업자도 가능하다.
- ⑤ 간이과세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1. ③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2. ⑤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며,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5장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1.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00)

-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③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④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⑤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CPA 2004)

- 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 ③ 매출한 후에 환입된 재화의 가액
- ④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 ⑤ 장기할부판매를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CPA 2006)

- ① 매출에누리
- ② 사업자가 용기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 ③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 ④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도중 파손된 재화의 가액
- ⑤ 공급되는 재화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상당액

4.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0)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②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③ 부동산임대용역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CTA 2004)

- 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재화를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③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 ⑤ 재화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로서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였다면 그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6.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1)

- 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 ②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미국 달러화로 받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전액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7. 다음은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CPA 2003 수정)

- ① 매입가 900,000원, 시가 1,000,000원의 판매용 상품을 단골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900,000원 이다.
- ② 장기할부판매에 따라 향후 회수할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를 장부상 매출금액으로 기록하였어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해당 현재가치에 이자상당액(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 ③ 1,000,000원에 외상판매하였으나 대금의 조기결제로 900,000원만 회수하였다더라도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다.
- ④ 1,000,000원에 판매한 제품의 품질상 하자를 이유로 100,000을 에누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다.
- ⑤ 장기간 사용하여 장부가액이 “0” 인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시가가 “0” 이 아닌 경우에도 공급가액은 “0” 이다.

8.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CTA 2003)

- ①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급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 ②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2014년 2월 10일이라면 2014년 제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③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 ④ 대손세액공제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사업자가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9.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처당권을 설정하고 있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② 2009년 2월 1일이 공급일인 경우 2014년 9월 25일 법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③ 대손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④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⑤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10. 다음 중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CTA 2009)

-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③ 영업용이 아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④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 ⑤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한 매입세액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3)

- ① 면세재화를 제조, 공급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비용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또는 등록, 신고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건물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 ④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의 수리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 ⑤ 골프장 토지 소유자가 골프코스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정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12.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목적으로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CPA 2007)

- 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② 영세농어민에 대한 조세부담 감소
- ③ 누적효과와 환수효과의 제거
- ④ 재고납부세액 환급
- ⑤ 재고매입세액 공제

13.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CTA 2001)

- ① 의제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면세농산물 등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 ③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
- ④ 제조업은 물론이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⑤ 통조림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면세농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2/102 이다.

14. 사업자 A는 의류제조업을 하다가 2015년 4월 30일 폐업하였다.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화가 다음 자료와 같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관세사 2010)

종류	취득일	취득원가	시가
제품	2015. 4. 20.	8,000,000원	10,000,000원
토지	2012. 6. 10.	100,000,000원	120,000,000원
본사건물	2013. 9. 10.	50,000,000원	40,000,000원
기계장치	2014. 1. 10.	60,000,000원	35,000,000원
승용자동차	2014. 3. 15.	30,000,000원	20,000,000원

- ① 65,000,000원 ② 72,500,000원 ③ 82,500,000원
- ④ 97,500,000원 ⑤ 105,000,000원

21.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 하였으며, 양도일에 대금전액 10,0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양도일 현재 관련되는 가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관세사 2011)

구분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토지	7,000,000,000원	3,000,000,000원	5,000,000,000원	5,000,000,000원
건물		1,000,000,000원	3,000,000,000원	3,500,000,000원
구축물	1,000,000,000원		2,000,000,000원	2,500,000,000원

- ① 3,000,000,000원 ② 4,000,000,000원 ③ 5,000,000,000원
 ④ 6,000,000,000원 ⑤ 8,000,000,000원

22. 다음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주)A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관세사 2011)

- 국내매출액은 10,000,000원 중 7,000,000원은 외상거래이며, 나머지는 현금거래이다. (국내매출액에는 매출에누리액 2,000,000원과 매출환입액 1,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임)
- 기계장치 처분가액 15,000,000원은 아직 현금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취득가액 20,000,000원, 처분일 직전의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원)
-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증여한 금액 : 3,000,000원
- 직매장반출액(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함) : 7,000,000원
-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 4,200,000원

- ① 25,000,000원 ② 28,000,000원 ③ 32,000,000원
 ④ 35,000,000원 ⑤ 36,200,000원

2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2)

- ① 재화를 공급한 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전 외의 대가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②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된다.
 ③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④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
 ⑤ 폐업시의 잔존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한다.

24.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 (관세사 2013)

대손세액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에서 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대손금액에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① ㉠ 매입세액, ㉡ 100분의 10
- ② ㉠ 매출세액, ㉡ 100분의 10
- ③ ㉠ 납부세액, ㉡ 100분의 10
- ④ ㉠ 매출세액, ㉡ 110분의 10
- ⑤ ㉠ 매입세액, ㉡ 110분의 10

25.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모든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관세사 2013)

- ①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 ③ 대가의 일부로 받는 산재보험료
- ④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 ⑤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

26. 휴대폰을 제조하는 ㈜대한의 2014년 제1기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대한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관세사 2013)

- 국내 판매분 공급가액 10,000,000원(매출에누리 500,000원, 매출환인 2,500,000원이 차감된 금액임) 중 2,500,000원은 외상거래이며, 나머지는 현금거래이다.
- 거래처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한 견본품의 제조원가 5,000,000원(시가 6,500,000원)
- 직매장에 반출한 제품의 제조원가 8,000,000원

- ① 16,500,000원
- ② 18,000,000원
- ③ 21,000,000원
- ④ 24,500,000원
- ⑤ 27,500,000원

27.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에 국내물품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을 국내사업자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 甲이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단, 관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였으며 자료에 제시된 이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관세사 2013)

관세의 과세가격	20,000,000원
관세	5,000,000원
원재료비	4,000,000원
甲이 乙에게 공급한 공급가액	30,000,000원

- ① 100,000원 ② 500,000원 ③ 900,000원 ④ 3,000,000원 ⑤ 3,400,000원

2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4)

- 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지급받아 법령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②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③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④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9.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4)

- ①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②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신고기간에도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기간에는 누락된 것은 확정신고시 추가로 할 수 있다.
- ③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④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0.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세사 2014)

- ㉠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
- ㉡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
-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
-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 고객에 재화를 공급받고 과거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된 마일리지로 공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
- ㉥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3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사 2010)

-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 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것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④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항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2)

-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이라 한다.
- ②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이라 한다.
-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④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의 시가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매입세액 공제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한다.) (관세사 2013)

- 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후의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③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④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34.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3)

- ①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② 수입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금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한다.
- ④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35.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관세사 2014)

- ①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③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
- ④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
- 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중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

36.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4)

-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② 제조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한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접대비 및 이의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7. ㈜수민은 자기 건물에서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수민의 2015년 제1기 거래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2015년 제1기 예정 및 확정 신고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각각 얼마인가?(단, 잡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고, 세무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하였다. 종이는 외부 판매없이 잡지와 광고에만 사용하였으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관세사 2010)

구분	잡지판매분 공급가액	광고분 공급가액	부동산임대분 공급가액	종이 매입세액
1월 1일 ~ 3월 31일	300,000,000원	200,000,000원	100,000,000원	14,000,000원
4월 1일 ~ 6월 30일	250,000,000원	250,000,000원	100,000,000원	16,000,000원
합계	550,000,000원	450,000,000원	200,000,000원	30,000,000원

- ① 예정 : 7,000,000원, 확정 : 6,750,000원
- ② 예정 : 7,000,000원, 확정 : 8,000,000원
- ③ 예정 : 7,000,000원, 확정 : 8,100,000원
- ④ 예정 : 8,400,000원, 확정 : 8,000,000원
- ⑤ 예정 : 8,400,000원, 확정 : 8,100,000원

38. 갑 은행은 2015년 1월 초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의 일부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상가로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0억 원이었다. 다음 자료에 의할 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의 정산액은 얼마인가?(단, 제1기 예정신고시에는 임대업의 공급가액이 없어서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공제받았다.) (관세사 2010)

구분	영업수익		사용면적	
	은행업	임대업	은행업	임대업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	800,000,000원	200,000,000원	700m ²	300m ²
2015년 제1기의 확정된 공급가액 또는 확정된 사용면적	900,000,000원	300,000,000원	740m ²	260m ²

- ① 40,000,0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 ② 40,00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
- ③ 60,000,0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 ④ 60,00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
- ⑤ 80,000,0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3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2015년 제1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비율로 옳은 것은?(단, 취득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은 없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은 구분할 수 있다.) (관세사 2011)

- ①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 ③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포함)
- ④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 ÷ 총예정공급가액
- ⑤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 총예정사용면적

제5장 정답 및 해설

1. ②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⑤

3. ⑤

4. ③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다.

5. ④

6. ①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7. ②

8. ③

매출세액에서 가감하도록 되어 있다.

9. ④

①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2009년 2월 1일이 공급일인 경우 2014년 7월 25일 법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면세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⑤ 확정신고에만 적용된다.

10. ⑤

11. ③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학원은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2. ③

13. ③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4. ③

15. ④

반환할 조건의 용기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16. ⑤

17. ①

18. ①

19. ④

20. ④

21. ②

22. ③

23. ①

24. ④

25. ④

26. ②

27. ②

28. ③

29. ②

30. ②

31. ③

32. ④

33. ②

34. ⑤

35. ⑤

36. ①

37. ⑤

38. ②

39. ⑤

40. ③

41. ⑤

42. ⑤

43. ③

44. ④

45. ④

제6장 간이과세 및 기타

1.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에는 광업, 부동산매매업, 양복점업, 제분업 등이다.
- ④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 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 해당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관세사 2010)

- ① 양복점업
- ② 광업
- ③ 부동산매매업
- ④ 변호사업
- ⑤ 세무사업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사 2012)

- ①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 가산을 하지 아니한다.
- ④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의 마지막 날 까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3)

-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다.
- ②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③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 ④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5천만원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150만원이다.

5.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4)

- ①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매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108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④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법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6.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0)

- ① 과자점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광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③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간이과세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납부세액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7.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수민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다음은 2014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 (1) 공급대가
 - 가. 과세분 : 30,000,000원 (이중 25%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임)
 - 나. 영세율 적용분 : 5,000,000원
- (2) 매입세액 : 1,500,000원 (전부 세금계산서 수령분임)
- (3)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
- (4) 확정신고시 납부할 가산세 : 30,000원

위의 자료에 의할 때, 2014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감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 ① 100,000원
- ② 160,000원
- ③ 154,000원
- ④ 212,000원
- ⑤ 232,500원

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수민은 201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변경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재고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민에게 적용되는 세액의 명칭, 공제 또는 추가납부여부 및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이다.
(관세사 2012)

취득일자	장부상 취득가(부가세 제외)	시가
2013년 5월 5일	11,000,000원	22,000,000원

- ① 재고매입세액 800,000원 공제
- ② 재고매입세액 880,000원 공제
- ③ 재고매입세액 800,000원 추가납부
- ④ 재고납부세액 880,000원 추가납부
- ⑤ 재고납부세액 1,600,000원 추가납부

19.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2)

- 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② 사업설비인 기계장치를 신설한 경우
- ③ 사업설비인 기계장치를 확장한 경우
- ④ 사업 설비인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 ⑤ 사업 설비인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20.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결정, 경정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2)

-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데 있어 이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의 결정, 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행하며,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할 수 없다.
- 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다.

2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관세사 2013)

- ①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확정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③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차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④ 휴업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2. 부가가치세법상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3)

- 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 ④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 ⑤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사 2014)

- ①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날부터 25일 이내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 ③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매월별로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 ⑤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어도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부가가치세법상 결정과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014)

- 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결정의 사유가 된다.
- ②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
- ③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
- ④ 사업자가 휴업 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
- ⑤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어도 발견된 당해 과세기간에는 경정할 수 없다.

25.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CTA 2009)

- 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15일 이내, 예정신고기한 지난 후 15일 이내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한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결정,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법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26.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CPA 2013)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30일내(조기환급 제외)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결정,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할 수 있다.
- ④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⑤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 환급신고에 있어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정답 및 해설

1. ⑤

- 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②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③ 제조업 중 양복점, 제분업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④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①

3. ②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4. ⑤

$$50,000,000 \times 20\% \times 10\% = 1,000,000$$

5. ③

제조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104 이외 8/108

6. ⑤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7. ⑤

납부세액	600,000원 (=30,000,000원×20%×10%)
(-) 공제세액	397,500원 (=30,000,000원×25%×1.3%+1,500,000원×20%)
(+) 가산세	30,000원
차감납부세액	232,500원

8. ②

$$11,000,000 \times 10/100 \times (-0.2) = 880,000 \text{ 재고매입세액}$$

9. ③

$$\text{건물} : 176,000,000 \times 10/110 \times (1-20\%) \times (1-20\%) = 10,240,000$$

$$\text{기계} : 55,000,000 \times 10/110 \times (1-50\%) \times (1-25\%) = 1,875,000$$

$$\text{상품} : 50,600,000 \times 10/110 \times (1-25\%) = 3,450,000$$

10. ③

$$3,300,000 \times 10\% \times (1-20\%) = 264,000 \text{ 납부세액}$$

11. ⑤
개인사업자단위로 판단한다.
12. ④
통지여부와 무관하다.
13. ③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4. ③
15. ④
16. ②
17. ②
18. ③
19. ⑤
20. ④
21. ①
22. ⑤
23. ①
③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매월별로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없다.
⑤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4. ⑤
즉시 재경정한다.
25. ②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다.
26. ④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